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2. 11 선고 2019가단5038195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

피고1. 주식회사 A

2. B

변론 종결2020. 1. 14.

판결 선고2020. 2. 1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,115,057원 및 그 중 91,457,802원에 대하여 2019. 1. 22.부터 2019. 3. 7.까지는 연 10%의, 2019. 3. 8.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의, 2019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박현배

별지